

창 원 지 방 법 원

제 21 민 사 부

결 정

사 건 2013비합54 사채권자집회결의인가신청  
신 청 인 주식회사 에스티엑스  
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93-3  
대표이사 추성엽  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, 담당변호사 김기영, 김선경, 이정환  
법무법인 해인, 담당변호사 윤근수

사건 본인 주식회사 에스티엑스  
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93-3  
대표이사 추성엽

주 문

별지 1 기재 사채에 관하여 2013. 11. 27.자 사채권자집회에서 이루어진 별지 2 기재 결의를 인가한다.

신 청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위 정본입니다.

창원지방법원

법원주사보 2013.12.26



이 유

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상법 제49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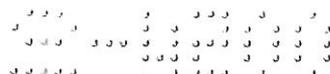
2013. 12. 24.



재판장 판사 고규정 

판사 이재환 

판사 황여진 



<별지 #1>

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사채의 명칭             | 주식회사 STX 제 96 회 무보증사채               |   |
| 사 채 종 목            | 무보증사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 구 분                |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원화 공모사채                |   |
| 발행일                | 2012. 5. 14.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 권 면 총 액            | 60,000,000,000 원                    |   |
| 할 인 율(%)           | 0.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 발행수익율(%)           | 6.9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 모집 또는 매출가액         | 각 사채 권면금액의 100%                     |   |
| 모집 또는 매출총액         | 60,000,000,000 원                    |   |
| 각 사채의 금액           | 공사채 등록법령에 의한 등록발행이므로 실물은 발행하지 아니한다. |   |
| 이자율                | 연리이자율(%)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.90  |
|                    | 변동금리부<br>사채이자율                      | -   |
| 이자지급<br>방법<br>및 기한 | 이자지급 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이자는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 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마다 연이율의 1/4 씩 후급하며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다. 다만, 이자지급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이자지급일로 하고,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. |
|                    | 이자지급 기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12년 08월 14일, 2012년 11월 14일, 2013년 02월 14일, 2013년 05월 14일, 2013년 08월 14일, 2013년 11월 14일, 2014년 02월 14일, 2014년 05월 14일.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신용평가<br>등급         | 평가회사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한국기업평가(주)/NICE 신용평가(주)  |
|                    | 평가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12년 05월 02일 / 2012년 05월 02일   |
|                    | 평가결과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A- / A-   |
| 상환방법<br>및 기한       | 상 환 방 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채의 원금은 2014년 05월 14일에 일시 상환한다. 단,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그 상환기일로 하고,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|


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|
| 상 환 기 한       |            | 2014년 05월 14일  |
| 납 입 기 일       |            | 2012년 05월 14일  |
| 등 록 기 관       |            | 한국예탁결제원  |
| 원리금<br>지급대행기관 | 회 사 명      | (주)우리은행 STX 남산타워업무팀  |
|               | 회사고유<br>번호 | 00254045   |
| 기 타 사 항       |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12년 4월 17일 케이비투자증권(주)와 대표주<br/>관계약을 체결함.</li> <li>▶ 본 사채는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사채를 등록발행하며,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<br/>니함.</li> <li>▶ 본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등록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제가 불가능하나,<br/>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,000 원을 수량의 1 단위로 기재함.</li> <li>▶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사채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채권자, 질권자 및 이해<br/>관계자가 사채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음.</li> <li>▶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등록필증을 수령하여 교부<br/>하거나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 309 조 제 5 항에 의한 일괄등<br/>록 청구가 있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작성, 비치하는 예탁사계좌부상에 그 수<br/>량만큼 기재함으로써 교부에 갈음함</li> </ul> |

인

<별지 #2>

제1호 채권재조정의 건

- 사채권자집회 결의일까지 발생한 기한이익상실을 취소하고, 기한이익상실 취소 통지의 권한을 사채관리회사인 에이치엠씨투자증권주식회사에게 위임한다.
- 사채권자집회 결의일까지 발생한 기한이익상실에 대한 원인이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, 기한이익상실에 대한 원인이유 불발생 간주 통지의 권한을 사채관리회사인 에이치엠씨투자증권주식회사에 위임한다.
- 사채모집위탁계약 제2-3조는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.

제2-3조 (재무비율 등의 유지)

“갑”은 2014년 3월 31일부터 만기시까지,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
1. “갑”은 자기자본이 1억원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

- 사채인수계약 제3조 제17항의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 다음의 항목을 추가한다.
  - (1) 파. 발행회사의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(자율협약) 신청에 대해,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발행회사와 ‘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서’를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확정적으로 결정하는 경우
  - (3) 발행회사가 사채권자를 대상으로 신주발행을 결정하고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로 신주인수대금과 상계하거나 현물출자 하는 방법으로 그 신주인수를 청약하는 경우, 그 청약한 금액에 상응하는 사채권에 대한 기한의 이익은 상실되는 것으로 한다.
- 사채인수계약 제3조 제9항에 의한 사채의 상환기한(만기)은 2017년 12월 31일로 변경한다.
- 사채권자집회 결의일부터 사채인수계약 제3조 제8항에 의한 사채의 이율은 연 2%로 변경한다.
- 사채권자집회 결의일까지 발생한 기한이익상실에 따른 연체이자 면제한다.
- 사채인수계약 제3조 제10항에 의한 이자의 지급기일은 만기시까지 매년 2월, 5월, 8월, 11월 14일에 지급하며, 만기일 직전 이자지급기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이자는 일할 계산하여 만기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한다.

제2호 원리금지급방법 변경 건

- 사채인수계약 제3조 제11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하며, 그에 따른 절차는 사채권자집회 결의에 대한 법원 인가가 확정되는 날 이후 지체 없이 이행한다.

11. 원리금 지급방법 및 지급사무처리장소 : 사채의 원리금은 사채권자가 발행회사 자금팀(아래신고처)에 사채 등록필증 제출과 함께 신고한 원리금 수령계좌로 발행회사가 직접 지급하며, 사채권자는 사채를 양도하는 등의 사유로 원리금 수령계좌를 변경하려 할 경우 이를 즉시 상기 절차에 따라 발행회사에게 재신고 해야 한다.

▷ ㈜STX 자금팀 공모사채 신고처 : 100-803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5가 631번지 STX 남산타워 ㈜STX 자금팀

제3호 출자전환의 건

- 사채권자들은 사채총액의 58%(이하 "출자전환 대상채권")를 출자하여 발행회사가 발행하는 기명식 보통주식(이하 "신주")을 인수하기로 한다.

단,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비율(무담보채권총액의 출자전환 비율)이 상기에 미달할 경우에는 사채권자들의 출자 비율도 그와 동일하게 조정한다.

- 발행회사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른 감자 이후 신주를 발행하기로 하며, 신주의 발행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르되, 발행가액의 경우 관련 법령에 반하지 않는 한 액면금액(2,500원)으로 하기로 한다.
- 발행회사가 상기 신주발행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경우, 출자전환 대상채권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일부터 이자(연체이자 포함)가 발생하지 아니한다.